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3.18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위탁조항을 신설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협회에 위탁처리 하였던
화물자동차 운송에 관한 일부사무가
법률 제6731호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위탁처리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제의 및 검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위탁조항을 신설함

□ 의안전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교통과 소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교통과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각 협회 소관별 다음의 권한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다만,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상속 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제외)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 ·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단서 동법 제16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 제28조 동법제44조제1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 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 사무명	위탁대상 기 관	근거 및 적용법규
	1~11	<생략>				1~11	<현행과 같음>		
		<신설>			교통과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각 협회 소관별 다음의 권한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업의 휴지 및 폐지 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 (다만,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제외)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 ·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단서 동법 제16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1조 제2항 동법 제28조 동법 제44조 제1항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동조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 (경영자연수교육)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 (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